

# 2016년 보살핌가정봉사원파견센터 예산(안) 총칙

## <재가노인지원서비스>

1. 2016년 보살핌가정봉사원파견센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세입·세출 예산안은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편성한다.
2. 2016년 총 예산은 2015년 예산 일금일억일천사백오십일만이천원(₩107,754,000)보다 칠백팔십사만칠천원(₩7,850,000)증가(13%) 증가한 일금일억이천이백삼십오만구천원(₩123,921,000)을 편성한다.
3. 보살핌가정봉사원파견센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016년 예산(안)

### 1)세입부

( 단위 : 천원 )

구분	2015년예산	2016년 예산	전년도대비 증감▲		비고
			금액	비율(%)	
경상보조금	95,000	100,000	5,000	5.3%	
후원금	3,910	10,160	6,250	160%	
전입금	8,844	10,790	1,946	22%	
이월금		2,962	2,962	100%	
잡수입		9	9	100%	
세입총계	107,754	123,921	16,167	15%	

### 2)세출부

( 단위 : 천원 )

구분	2015년예산	2016년 예산	전년도대비 증감▲		비고
			금액	비율(%)	
사무비	72,434	86,769	14,335	20%	
사업비	35,320	37,143	1,823	5%	
잡지출		9	9	100%	
세출총계	107,754	123,921	16,167	15%	

4. 2016년도 세입. 세출 예산안 편성은 아래도 같이 전년도 기준하여 편성한다.

- 1)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한다.
- 2)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한다.
- 3)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집행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5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, 법인전입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

## 2016년 보살핌가정봉사원파견센터 예산 총칙 <노인돌봄기본서비스>

1. 2016년 보살핌가정봉사원파견센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세입·세출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편성한다.

2. 2016년 보살핌가정봉사원파견센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총예산은 2015년 예산 일금일역구천오십칠만사천원(₩190,574,000)보다 일금일천오백이십삼만팔천오백원(₩15,238,500 증가 8%) 증가한 일금이억오백팔십일만이천오백원(₩205,812,500)을 편성한다.

3. 보살핌가정봉사원파견센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016년 예산(안)

1) 세입부

(단위:천원)

구분			2015년 예산	2016년 예산	전년도대비 증▲감		비고
					금액	비율(%)	
보조금	보조금수입	경상보조금수입	190,574	154,800	▲35,774	-19%	
보조금	보조금수입	추가경정(예정)	0	46,642	46,642	100%	
세입총계			190,574	201,442	10,868	6%	

2) 세출부

(단위:천원)

구분			2015년 예산	2016년 예산	전년도대비 증▲감		비고
					금액	비율(%)	
사무비	인건비	인건비	160,790	199,151	38,361	24%	*급여 *퇴직적립금 *사회보험료 *제수당_혹한/혹서기 활동비
	운영비	운영비	17,817	1,360	▲16,457	-92%	*여비_교육참여경비 *제세공과금_배상책임보험료
		기타운영비	11,965	931	▲11,034	-92%	*현황조사교통비 *수용비 및 수수료 □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침에 따른 업무(안전확인, 생활교육, 서비스연계)중 생활교육, 현황조사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있어 기타운영비(437만원)의 추가예산 편성이 필수불가결함
세출총계			190,572	201,442	10,870	6%	

4. 2016년도 자체부담금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총예산	사업비부담자	부담금액	부담방법	비고
7,100	보살핌가정봉사원 파견센터	7,100	자부담	후원금 - 자원연계사업 시설전입금 - 명절 선물, 공공요금

4.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(안) 편성은 아래와 같이 전년도 기준하여 편성한다.

- 1)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.
- 2) 직원의 보수는 2016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침을 기준으로 한다.
- 3) 예산 과목은 관, 항, 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.

5. 2016년 예산집행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)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한다.
- 2)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한다.
- 3)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집행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